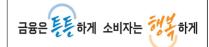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



보도	2024.7.17.(수) 조간	배포	2024.7.16.(화)	
담당부서	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	권재순 (02-3145-7270)
		담당자	팀 장	김태훈 (02-3145-7260)

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- ③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

< 주요 내용 >

- ① '경유계약'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.
 - 아울러, '수수료 부당지급'은 설계사·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- ②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 주로 기인합니다.
 -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며,
 - 특히, 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,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큽니다.
- ③ 금융감독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입니다.
- ④ 만약,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 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, 보험소비자께서는 청약 시 받은 명함, 서류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하며,
 - 아울러, **컴슈랑스 영업**이나 **브리핑 영업** 등의 경우 **보장성보험**을 마치 **저축성 보험**인 것처럼 **판매**하는 등 **불완전판매 우려**가 큰 만큼 **가입상품**의 **종류**, **보장내역** 등도 **꼼꼼히 살펴주시길** 당부드립니다.
- ※ 동 연속기획 보도자료는 빈번하게 적발되어온 주요 위법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로 모든 규제사항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,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시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 추진 배경

- □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(이하 'GA')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5월부터 GA의 주요 위법사례 및 향후 검사· 제재 방향 등을 연속기획물(시리즈)로 공유·전파하고 있으며,
 - 지금까지 **2회**에 걸쳐 ^①**작성계약**(허위·가공계약) 및 ^②부당 **승환계약**에 대한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.
- □ 이번에는 연속기획 세 번째로 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8호 및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'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'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.

<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연속기획물 >

회 차	주 제 (보도일)		
1	작성계약(허위·가공계약)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·제재 방향('24.5.28.)		
2	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('24.6.25.)		
3	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		

Ⅱ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의 의미

- □ (경유계약)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(이하 '실제 모집설계사')가 아닌 다른 설계사(이하 '경유설계사')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 계약을 의미합니다.
 - 현행「보험업법」제97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이러한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

<참고>「보험업법」제97조

제97조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

1~7. (생략)

8.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(후략)

- □ (수수료 부당지급) 설계사·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 - 현행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수수료 부당 지급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*하고 있습니다.
 - * (예외) ^①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·GA·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, ^②GA가 소속 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GA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
 - ※ 경유계약 시 GA 또는 경유설계사가 자격이 없는 실제 모집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GA나 경유설계사는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으로 동시에 제재

<참고>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등

□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

제25조(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지행위) ①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는 <u>다음 각 호의 어느</u>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- 1. (생략)
- 2. <u>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대리·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.</u> 다만,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</u> (후략)

□「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」

제23조(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지행위) ① (생략)

-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- 1. <u>다음 각 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·중개</u> 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
 - 가. <u>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·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</u>
 - 나. <u>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.</u> 다만,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. (후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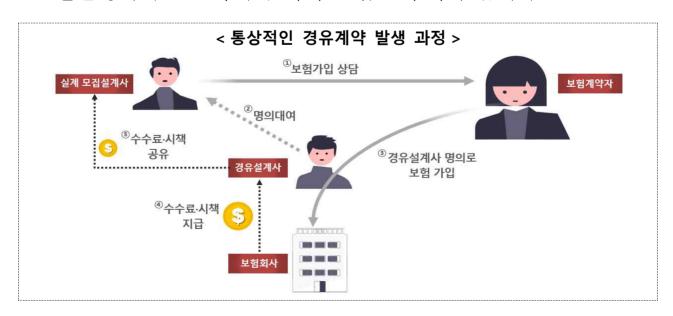
□ 舊「보험업법」(☞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으로 이관)

제99조(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) ① (생략)

- ② <u>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</u>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,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.
- 1. 보험설계사: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
- 2. 보험대리점: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(후략)

Ⅲ 발생 원인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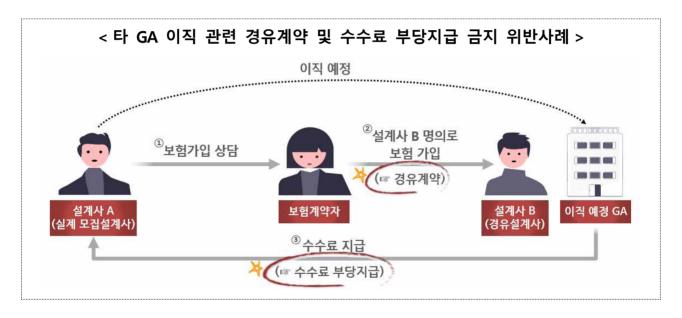
- □ (발생 원인)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 주로 기인합니다.
 - 경유계약은 설계사가 이직 과정* 또는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, 높은 시책을 얻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**에서 발생합니다.
 - * 이직 후 보험회사로부터 새로운 판매위촉코드를 받지 못한 상태
 - ** (예) ^①보험회사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대규모 시책을 책정 \rightarrow ^②설계사 A의 판매실적이 부족하여 설계사 B가 해당상품 계약을 설계사 A 명의로 체결(경유계약) \rightarrow ^③설계사 A는 목표를 달성해 시책 대상자로 선정 \rightarrow ^④설계사 A는 B와 혜택(시책) 공유
 - 아울러, **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** 등과 같은 **변칙적인 보험영업 과정***에서 주로 **발생**하고 있습니다.
 - * '田.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' 참고
- □ (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)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며,
 - 특히, 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,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큽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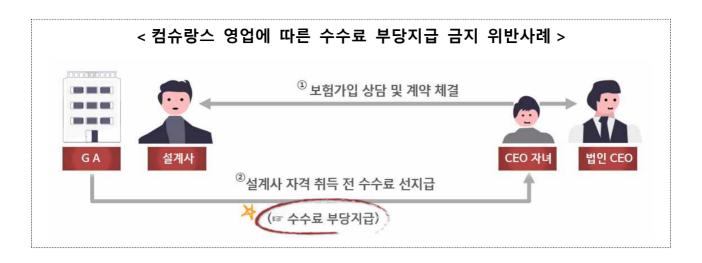
Ⅳ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

※ 최근 금감원 검사에 적발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를 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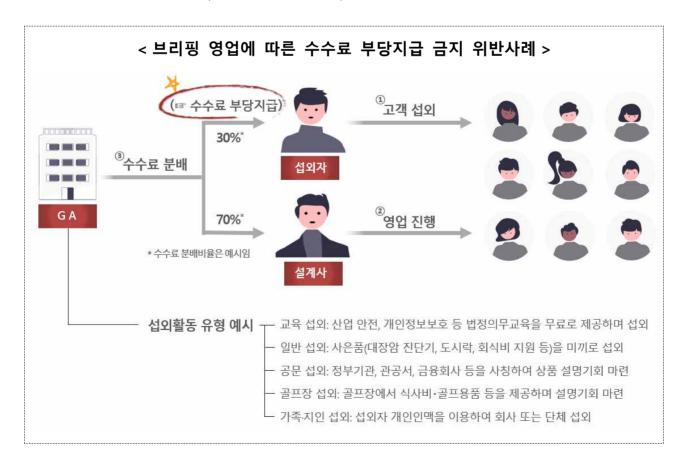
- ① (타 GA 이직) 타 GA로 이직을 앞둔 설계사 A는 기존 소속 GA 로부터 받을 수수료(유지수수료)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.
 - 이에 기존 GA 소속을 유지한 채 이직할 GA 소속 설계사 B의 명의로 신규 모집계약을 체결(경유계약)하였고,
 - 이직 대상 GA는 자사에 소속되지 않은 설계사 A에게 신규 모집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(수수료 부당지급).



- ② (컴슈랑스 영업) 법인 CEO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'컴슈랑스'' 영업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 에게 법인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입니다.
 - * 법인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,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방식(**Com**pany와 In**surance**의 합성어)
 -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*하였습니다(수수료 부당지급).
 - * CEO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지속 실패하자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 수수료를 부당지급



- ③ (브리핑 영업)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으로, 통상 섭외조직*(의무교육 등 실시)을 별도로 운영합니다.
 - * 다수의 고객을 모아 설계사에게 보험 모집기회를 제공하고, 보통 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수령
 - 일부 **브리핑 영업 GA**는 **설계사 자격이 없는 섭외자에게 수수료**를 **지급**하였습니다(수수료 부당지급).



위반 시 제재 양정기준 및 최근 제재 실적

- ☐ (제재 양정기준)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·부당의 정도에 따라 금전제재 및 기관·신분제재가 부과됩니다.
 - **경유계약**의 경우 **위반 1건**당 **1천만원 이하**의 **과태료** 부과가 가능 하고,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*할 수 있습니다.
 - *「보험업법」제86조, 제88조, 제134조, 제136조, 제209조
 - o 수수료 부당지급의 경우 위반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, 시정·중지·게시명령 등도 부과*할 수 있습니다.
 - *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제51조, 제52조, 제69조

<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부과 가능한 조치 >

구 분	G A	GA 소속 임직원	GA 소속 설계사
경유계약	등록취소, 업무정지(6개월 이내),	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과태료(1천만원 이하), 등록취소,
	과태료(1천만원 이하), 주의·경고 등		업무정지(6개월 이내)
수수료 부당지급	과태료(3천만원 이하), 시정명령,	해임요구, 직무정지, 문책경고,	과태료(3천만원 이하), 시정명령,
	중지명령, 게시명령,	주의적경고, 주의 등(임원),	중지명령, 게시명령,
	기관경고, 기관주의 등	면직, 정직, 감봉, 견책 등(직원)	기관경고, 기관주의 등

- □ (최근 제재실적) 지난 4년간('20~'23년)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GA에게는 등록취소, 과태료(총 35억원) 등이 부과되었고,
 -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, 감봉 등,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, 업무정지(30~90일), 과태료(20~3,500만원) 등이 부과되었습니다.

< 최근 4년간('20~'23년)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관련 제재현황 >

구분	기관 제재	임직원 제재	설계사 제재
경유계약 (35개사)	등록취소: 1개사 업무정지(30~90일): 4개사 총 과태료 17억 1,210만원 기관경고: 1개사 기관주의: 3개사		업무정지(30~90일): 36명 과태료(20~3,500만원): 206명
수수료 부당지급 (38개사)	등록취소: 3개사 업무정지(30~90일): 3개사 총 과태료 17억 8,370만원 기관경고: 2개사 기관주의: 2개사		등록취소: 1명 업무정지(30~90일): 31명 과태료(70~3,500만원): 66명

주1) '20~'23년(조치요구일 기준) 보험검사3국의 GA 지적사항 중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관련 지적사항만 추출 주2) 제재 병과 시 인원수 별도 계산(예: 업무정지 30일 & 과태료 50만원 → 업무정지 +1명, 과태료 +1명) 주3) 수수료 부당지급 관련 제재현황은 舊「보험업법」제99조 제2항 위반건을 정리

VI 향후 계획 및 소비자 당부

- ① GA 영업현장에서 지속·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입니다.
 - 특히, 기관제재(GA 영업정지 등)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,
 -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.
- ② 향후 금융감독원은 컴슈랑스 영업,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.
 - 해당 영업방식은 수많은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고 건전한 모집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.
- ③ 만약,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, 보험소비자께서는 청약 시 받은 명함, 서류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하며,
 - 아울러,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보험을
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
 가입상품의 종류,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붙임1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 조치사례

회사명	조치요구일	위법 내용
	'21.7.7.	<경유계약 금지 위반>
		설계사 甲은 OO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새로운 판매위촉코드(설계사코드)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*였다.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고객의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왔고,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만기가 도래하면 고객을 놓칠 수밖에
00		없는 상황이기에 다른 설계사의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처리하기로 하였다.
보험대리점		* 이직 후 보험회사로부터 새로운 판매위촉코드를 받아야 하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
		결국 설계사 甲 등 42명은 2016.7.1. ~ 2019.6.27. 기간중 647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고OO 등 4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억 4,960만원을 지급받았다.
		OO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2억 6,490만원과 기관주의, 소속설계사에게는 과태료(20~3,500만원)와 업무정지(30~90일)가 부과되었다.
□□ 보험대리점	'21.11.19.	<경유계약 금지 위반>
		자녀를 설계사로 육성하고 싶었던 설계사 丙은 자녀가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자 총 235건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자녀의 명의로 체결하였다.
		결국 설계사 丙 등 14명은 2018.3.7. ~ 2020.6.29. 기간중 384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조OO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억 1,030만원을 지급받았다.
		□□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1억 5,150만원과 업무정지(30일),前 대표이사 2인에게는 주의 및 퇴직자 위법사실통지, 소속설계사에게는 과태료(20~3,500만원)와 업무정지(90일)가 부과되었다.
	'23.7.27.	<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>
△△ 보험대리점		<u>브리핑 영업 전문 GA인 △△보험대리점은 ●●생명보험의 보험 상품을 모집하면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섭외조직과 함께 영업을 하였다.</u>
		△△보험대리점은 2018.8.9.~2021.3.19. 기간중 1,18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강OO(섭외자) 등 107명에게 총 2억 7,0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.
		△△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1억원,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부과되었다.

^{*}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내 '업무자료 - 검사·제재 - 제재관련 공시' 메뉴에서 제재내용 확인 가능

붙임2 관련 법령

□「보험업법」

제8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(생략)

-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(후략)

제88조(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) ① (생략)

-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2~6. (생략)
- 7.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,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
- 제97조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1~7. (생략)
 - 8.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(후략)
- 제134조(보험회사에 대한 제재) ① 금융위원회는 <u>보험회사(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」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제4호,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(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</u>
 - 1.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·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· 경고 · 문책의 요구
 - 2.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
 - 3. 임원(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.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)의 해임권고·직무정지
 - 4.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
- 제136조(준용) ① 국내사무소·<u>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</u>한다. 이 경우 "보험회사"는 각각 "국내사무소"·"보험대리점" 또는 "보험중개사"로 본다.

제209조(과태료) ①~⑥ (생략)

- ⑦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</u>한다.
- 1~6. (생략)
- 7.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·제96조제1항·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. 다만,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
7의2~9. (생략)

10.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(후략)

□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

- 제25조(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지행위) ①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는 <u>다음 각 호의 어느</u>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- 1. (생략)
 - 2. <u>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대리·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.</u> 다만,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 (후략)

제51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) ① (생략)

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.

- 1.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
- 2.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
- 3.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
- 4.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
- 5. 기관경고
- 6. 기관주의
- 7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(후략)
- 제52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해임요구
 - 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 - 3. 문책경고
 - 4. 주의적 경고
 - 5. 주의
 -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.
 - 1. 면직
 - 2. 6개월 이내의 정직
 - 3. 감봉
 - 4. 견책
 - 5. 주의 (후략)
- **제69조(과태료)** 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1~7. (생략)
 - 8.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 ·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. 다만,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

9~13. (생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~4. (생략)
- 5.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(후략)

□ 「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」

제23조(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지행위) ① (생략)

-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- 1. 다음 각 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·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는 행위
 - 가. <u>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·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</u> 체결한 경우
 - 나. <u>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.</u> 다만,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. (후략)

제41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) ①~② (생략)

- ③ <u>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</u> (후략)
- ④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
- 1. 영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
- 2. 수사기관에의 통보
- 3. 다른 행정기관에의 행정처분 요구
- 4. 경영이나 업무에 대한 개선 요구 (후략)
- 제42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<u>법</u>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(후략)
- [별표1]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(제41조제3항 및 제42조 제1항 관련)

1~14. (생략)

15.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(후략)

□ 舊「보험업법」(☞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으로 이관)

제99조(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) ① (생략)

-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,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・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.
- 1. 보험설계사: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
- 2. 보험대리점: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 사에 대한 경우 (후략)

제209조(과태료) ①~⑤ (생략)

- ⑥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1~6. (생략)
- 7. <u>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</u> 제95조의2·제95조의4·제96조제1항·제97조제1항· <u>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</u>. 다만,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11.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(후략)